

# 사학혁신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정 2021. 11. 11.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의 ‘사학혁신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부 및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 제2장 사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제3조(위원회 설치) 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의 총괄·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계획 및 세부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성과지표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업의 세부 집행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사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법인 사무국장, 교육연구처장, 기획평가처장, 학생행복처장, 대외협력처장, 행정지원처장을 두며, 그 밖에 8명의 위원은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관 제35조의3에 따른 구성원 대표단체가 각각 추천한 교원 2명, 학생 2명, 직원 2명과 총동문회장이 추천한 동문 1명, 총장이 추천한 외부 전문가 1명을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규정의 직제순에 따른 당

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결)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 제3장 사학혁신지원사업단

제7조(사업단 설치) 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학혁신지원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업단에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추진을 위하여 총괄팀, 소통협력팀, 법인과제팀을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총괄팀 : 사업 총괄 및 대학 부문 사업 운영 및 조정
2. 소통협력팀 : 사업 운영에 필요한 대외협력 업무
3. 법인과제팀 : 법인 부문 사업 운영 및 조정

제8조(사업단의 기능)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사업 기본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서 작성
2. 사업 세부 집행계획의 수립
3. 사업과 관련한 성과지표의 관리
4. 사업과 관련한 세부 집행지침 수립 및 운영
5. 사업 시행과정과 성과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및 평가
6.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 평가
7. 그 밖에 사업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

제9조(사업단의 구성) ① 사업단에는 사업단장을 두며, 부단장과 각 팀에 팀장을 둘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부총장으로 하고, 사업단의 소관 업무를 담당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부단장은 법인 사무국장과 기획평가처장으로 하고, 사업단장을 보좌하고 사업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원 및 행정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연구원 및 행정인력의 인사·보수·복무에 대해서는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관,

교원인사규정, 교직원인사규정, 계약직인사규정 중 해당 규정을 준용하되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0조(성과관리위원회) ①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과 사업 진행사항 점검을 위하여 사업단에 성과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연 1회 이상 사업 운영 전반에 걸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과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하며,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장이 추천한 인사 2명, 총장이 추천한 교직원 5명,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관 제35조의3 구성원 대표단체가 각각 추천한 교원 2명, 학생 2명, 직원 1명과 총동문회장이 추천한 동문 1명, 총장이 추천한 외부 전문가 2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소위원회 구성) ① 사업단은 사업 조정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장 재정 및 사업비 관리

제12조(재정 및 사업기간 등) ① 본 사업의 재정은 교육부의 사학혁신지원사업비(대응재원 등 포함)로 충당하며, 회계연도는 사업협약에 의한다.

② 사업기간은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을 교육부 및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13조(사업비 관리) ①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및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규정한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른다.

② 사업비는 교비회계 또는 법인회계에 계상하며,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사업비의 비목별 수입 및 지출 내역이 구분되도록 관리·운영한다.

③ 사업단은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 등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장 보칙

제14조(세부사항)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 및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업 관련 훈령 및 지침 등에 따른다.

② 이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운영세칙 등은 사업단장이 따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효력) 이 규정은 사업이 중단 또는 종료된 때에는 폐지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수행되었거나 집행되었던 사업추진 실적과 사업비 집행, 한시조직 설치, 교직원 채용 및 전보·겸직발령, 위원 위촉 및 위원회 설치 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수행·집행된 것으로 본다.